

1. 개정이유

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 기준액 선택제 신설(제6조의2)
 -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 신설(별표 2)
 - 기준액 산출방법(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 등 명시
-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신설(별표 3)
 - 근해·연안·구획·정치망어업의 종류별·규모별 기준액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및 적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업으로 한다.

1.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2.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근해어업, 같은 영 제22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연안어업, 같은 영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획어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규모는 법 제4조에 따른 어업 실태조사의 규모를 따른다. 다만, 정치망어업의 규모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기준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 등에 의한 산출

2. 제3항에 따른 기준액 적용

제8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어선 · 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6조(어선 · 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 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은 <u>별표와 같다</u> .	③ ----- ----- ----- -- <u>별표 1과</u>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및 적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 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업으로 한다.</u> 1.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u>에 따른 정치망어업</u> 2.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의 근해어업, 같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연안어업, 같은 영 제23조제1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u>구획어업</u>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 해어업의 규모는 법 제4조에 따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
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른 어업실태조사의 규모를 따른
다. 다만, 정치망어업의 규모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
액”이라 한다)의 산출방법은 별
표 2와 같으며, 기준액은 별표 3
과 같다.

④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
자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
등에 의한 산출

2. 제3항에 따른 기준액 적용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
과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 관련)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사·발표하는 어업실태조사를 활용한 어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으로 하고,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은 기준액을 산출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업이익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어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업이익을 연평균한 어업이익으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산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전에 시행한 기준액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는 직전에 시행한 기준액 대비 1.5배까지로 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직전에 시행한 기준액으로 한다.
 - 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연도 어업이익이 기준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이익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어업이익의 90퍼센트를 곱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나. 기준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어업이익의 3년분이 직전에 시행한 기준액 보다 낮은 경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제6조의2 관련)

(단위: 백만원)

1. 근해어업

저인망				대형 트롤	선망		형망	문어 단지	자리돔 들망	붕수망
대형	중형				대형	소형				
외끌이	외끌이		쌍끌이							
	동해구	서남해구	서남해구							
612	839	1,054	1,557	1,092	3,324	834	231	332	179	111

동해구중형트롤		기선권현망		연승		쌍끌이대형저인망	
40톤 미만	592	200톤 미만	1,048	20톤 미만	419	100톤 미만	770
40톤 이상	1,604	200톤 이상	1,091	20~35톤 미만	559	100~130톤 미만	1,232
				35톤 이상	614	130톤 이상	1,459

구분	채낚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35톤 미만	267	292	471	323	374
35~65톤 미만	240	449	637	468	431
65톤 이상	277	419	798	589	613

잠수기	1구	2구	3구	4구	5구
	341	210	245	223	435

2. 연안어업

구분	1톤 미만	1톤 이상 2톤 미만	2톤 이상 3톤 미만	3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6톤 미만	6톤 이상 7톤 미만	7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9톤 미만	9톤 이상 10톤 미만
개량안강망	57	64	80	87	87	87	149	152	113	152
선망	33	62	85	104	123	119	133	145	145	145
통발	28	35	46	50	132	132	148	165	165	165
조망	17	29	51	51	51	51	76	105	78	105
자망	28	35	46	62	66	60	111	124	134	149
들망	66	66	84	66	102	105	105	141	105	143
복합	29	35	41	46	69	78	76	84	88	93

3.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선인망, 장망	지인망, 해선망	들망	승망류	안강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70	33	52	50	83	116	140	163

4. 정치망어업

대형	중형	소형
727	390	345